

□ 공고 제2018-89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정관 일부개정정관을 이에 공포한다.

2018. 9. 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정관 제50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 일부개정정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양 · 한방협진기구로 양 · 한방협진센터를”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자산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공의료팀”을 “공공의료복지팀”으로 하고 “공공의료팀장”을 “공공  
의료복지팀장”으로 한다.

② 양 · 한방협진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한방협진센터 운영규정”을 “의한협진센터 운영규정”으로 하고, 각  
조 · 항 중 “양 · 한방협진”을 각각 “의 · 한협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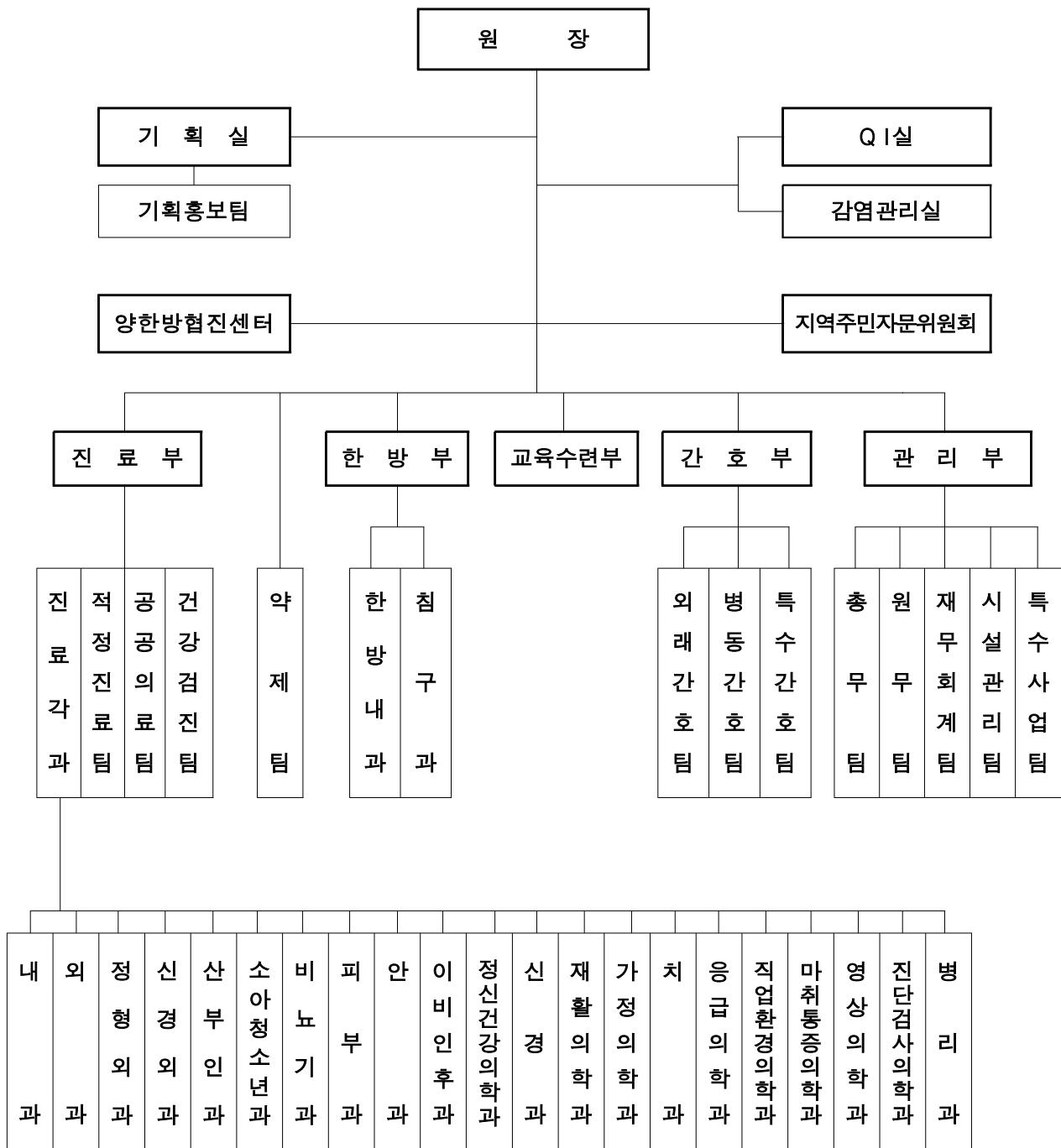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7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 실, QI실, 감염관리실, 진료부, 약제팀, 한방부, 교 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u>양·한방협진</u> <u>기구로 양·한방협진센터를</u>, 자문기구로 지역주 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 (생략) ③ 의료원의 직제는 별표 1과 같다</p>	<p>제27조 (하부조직) ①----- ----- -----관리부를 두며, 자문기 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원의 직제는 별표 1과 같다(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p> <p>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p> <p>① 자산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공의료팀”을 “공공의료복지팀”으로 하고 “공공의료팀장”을 “공공의료복지팀장”으로 한다.</p> <p>② 양·한방협진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명 “양한방협진센터 운영규정”을 “의한협진센터 운영규정”으로 하고, 각 조·항 중 “양·한방협진” 을 각각 “의·한협진”으로 한다.</p>

현행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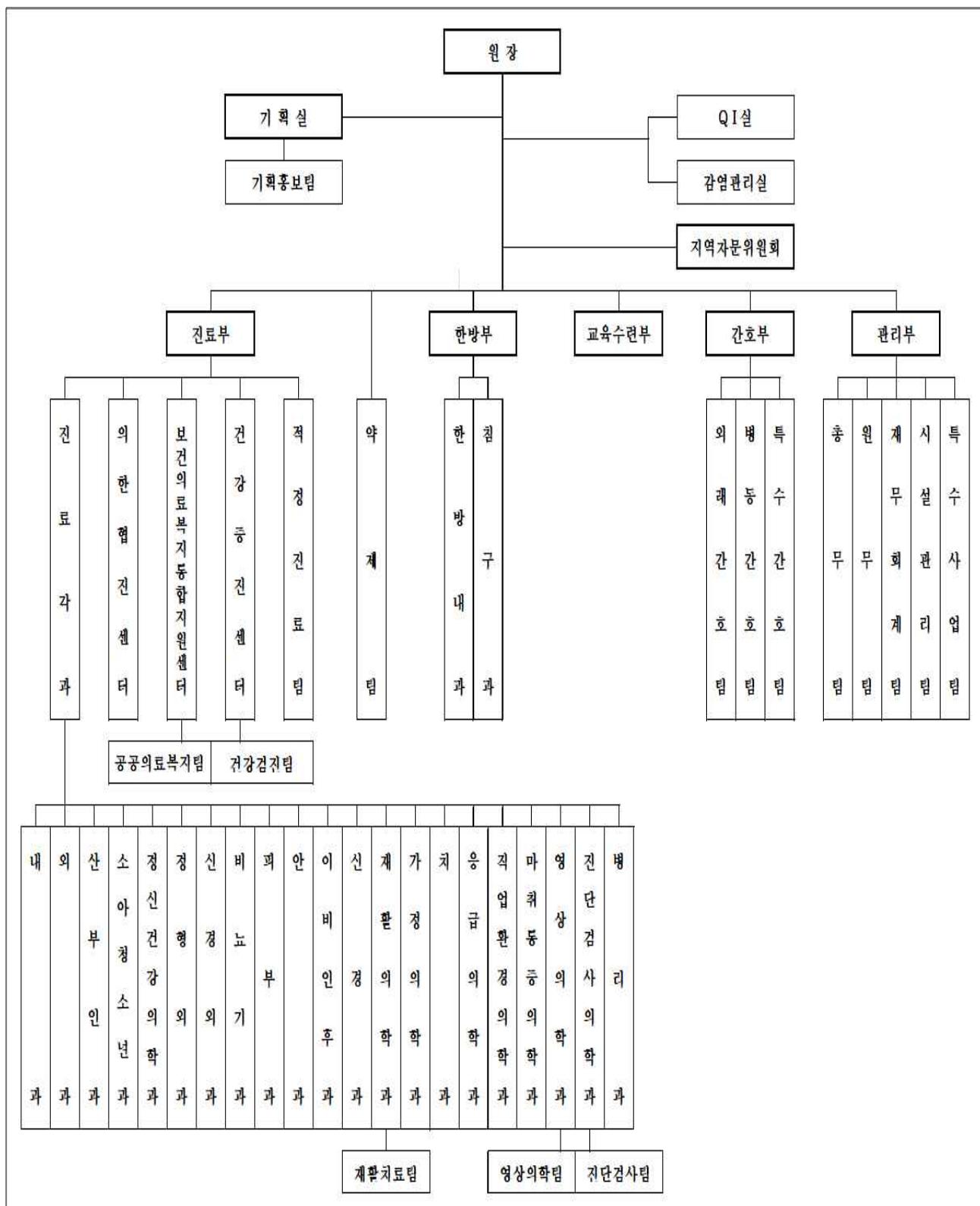
청주의료원기구표



## 개정

[별표 1]

### 청주 의료원 기구표



□ 공고 제2018-90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9. 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44호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양 · 한방협진기구로 양 · 한방협진센터를”을 삭제한다  
같은조 제2항 중 “양 · 한방협진 센터에는 센터별로 센터장 1인을 둔다.  
다만, 진료부장, 한방부장, 교육수련부장, 양 · 한방협진센터장은”을 “진  
료부장, 한방부장, 교육수련부장은”으로 한다

제6조의 3 제2항과 제3항 중 “양 · 한방협진”을 “의 · 한협진”으로 한다

제6조의 4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한협진센터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 건강증진센터장은 의사  
또는 한의사로 보하며, 진료과장은 겸직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료부장 밑에 진료과, 의 · 한 협진기구로 의 · 한협진센터, 공공의료  
사업과 사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증진  
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적정진료팀을 둔다.

② 진료과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

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두고, 진료과장은 의사로 보한다.

⑤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팀, 건강검진팀, 진단검사팀, 영상의 학팀, 재활치료팀, 수술실, 중환자실,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석고실, 구강 보건실, 심사실, 의무기록실을 두며 각 진료과 별도로 필요로 하는 실은 따로 둘 수 있다.

제14조 중 제목 (양·한방협진센터)를 (의·한협진센터)로 하고 “양·한방협진 센터”를 “의·한협진센터”로 한다.

제16조 제5항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의료복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2호 중 “지역보건사업”을 “지역보건의료복지사업”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6조 (하부조직) ①의료원장 하부조직으로 기획실, QI실, 감염관리실,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고, <u>양·한방협진기구로 양·한방협진센터를</u>,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기획실에는 실장 1인을, 진료부, 한방부, 교육수련부, 간호부, 관리부에는 각각 부장 1인을 두며, <u>양·한방협진 센터에는 센터별로 센터장 1인을 둔다. 다만, 진료부장, 한방부장, 교육수련부장, 양·한방협진센터장은</u> 진료과장을 겸직한다.</p> <p>③~⑤ (생략)</p>	<p>제6조 (하부조직) ①----- ----- ----- ----- 두고, 자문기구로 지역주민자문위원회를 둔다.</p> <p>②----- ----- ----- ----- 진료부장, 한방부장, 교육수련부장은 -----.</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 3 (기획실장 및 부장의 임무)</p> <p>① (생략)</p> <p>②진료부장은 원장을 보조하여 진료부소속 각 부서를 총괄하고 <u>양·한방협진</u>을 원활히 추진하며 그 소속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p> <p>③한방부장은 원장을 보조하여 한방부소속 각 부서를 총괄하고 <u>양·한방협진</u>을 원활히 추진하며 그 소속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p> <p>④~⑥ (생략)</p>	<p>제6조의 3 (기획실장 및 부장의 임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의·한협진</u>을 -----.</p> <p>③----- ----- <u>의·한협진</u>을 -----.</p> <p>④~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 4 (보직선임) ① (생략)</p> <p>②<u>양·한방협진센터장은 의사 또는 한의사로 보한다.</u></p> <p>③ (생략)</p>	<p>제6조의 4 (보직선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한협진센터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 건강증진센터장은 의사 또는 한의사로 보하며, 진료과장을 겸직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안)
<p>제7조 (진료부) ① 진료부장 밑에 <u>진료과, 적정진료팀, 건강검진팀, 공공의료팀</u>을 두며, 적정진료팀에는 심사실, 의무기록실을 둔다.</p> <p>② 진료과에는 <u>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u>를 두고, 진료과장은 의사로 보하며, 진단검사의학과에 진단검사팀을 영상의학과에 영상의학팀을, 재활의학과에 재활치료팀을, 내과에 내시경실을, 치과에 구강보건실을 둔다.</p> <p>③~④ (생략)</p> <p>⑤ (신설)</p>	<p>제7조 (진료부) ① 진료부장 밑에 <u>진료과, 의·한협진기구로 의·한협진센터, 공공의료사업과 사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적정진료팀을 둔다.</u></p> <p>② 진료과에는 <u>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두고, 진료과장은 의사로 보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의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복지팀, 건강검진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 수술실, 중환자실,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석고실, 구강보건실, 심사실, 의무기록실을 두며 각 진료과 별도로 필요로 하는 실은 따로 둘 수 있다.</u></p>
<p>제14조 (양·한방협진센터) 양·한방협진센터로는 뇌질환증재활센터, 관절통증센터, 성인병센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p>	<p>제14조 (의·한협진센터) 의·한협진센터로는 -----.</p> <p>-----.</p>
<p>제16조 (업무분장)</p> <p>①~④ (생략)</p> <p>⑤ <u>공공의료팀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지역보건사업의</u> 지원사업 추진</li> <li>3. (생략)</li> </ol> <p>⑥~⑯ (생략)</p>	<p>제16조 (업무분장)</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u>공공의료복지팀장</u>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지역보건의료복지사업의</u>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⑥~⑯ (현행과 같음)</p>

**현행**

[ 별표 1 ]

직 군	직 렬	직 종	직 급	계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74	1	64	6	39	99	179	163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06		63	4	33	86	154	146	20	
		의무직	50		50							
		의사	44		44							
		치과의	4		4							
		한의사	2		2							
		약사/한약사	13		13							
		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	87			2	6	19	36	24		
		임상병리사	19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6									
일 반		사회복지사	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2									
		의무기록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사	78						5	14	39	20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리	42		1	2	6	11	17	5		
		행정	32									
일 반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5						2	8	12	3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3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개정

[ 별표 1 ]

직 군	직 렬	직 종	직 급	계	임 원	계 약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574	1	64	6	39	99	179	163	23	
		소 계	1	1								
		원 장	1	1								
의 료		소 계	506		63	4	33	86	154	146	20	
		의무직	50		50							
		의사	44		44							
		치과의	4		4							
		한의사	2		2							
		약사/한약사	13		13							
		간호사	278			2	27	62	104	83		
		의료기술	87			2	6	19	36	24		
		임상병리사	19									
		방사선사	17									
		물리치료사	17									
		작업치료사	7									
		치과위생사	6									
		사회복지사	5									
일 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응급구조사	4									
		산업위생기사	3									
		의무기록사	3									
		영양사	5									
		간호조무사	78						5	14	39	20
		소 계	67		1	2	6	13	25	17	3	
		관리	42		1	2	6	11	17	5		
		행정	32									
		전기기사										
일 반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의공기사										
		소방기사										
		기능	25						2	8	12	3
		운전사	1									
		조리사	1									
		사무원	13									
		장례지도사	8									
		기계원	2									

□ 공고 제2018-91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9. 3.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45호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공공의료팀”을 “공공의료복지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으로 한다

제37조제6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별표1의 제2호 중 “공공의료팀장”을 “공공의료복지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생략). 1.~14. (생략) 15. 부서라 함은 기획실의 기획홍보팀, 진료부의 진료 각 과와 적정진료팀, 건강검진팀, <b>공공의료팀</b> , 한방부의 진료 각 과, 약제팀, 간호부의 외래 간호팀,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및 관리부의 총무팀, 원무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특수사업팀을 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14. (현행과 같음) 15. -----  <b>공공의료 복지팀, 재활치료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팀-----</b> -----. -----.
제37조 (휴직) (생략) 1.~5. (생략)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8. (생략)	제37조 (휴직)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 ----- <b>6개월-----</b> -----. 7.~8. (현행과 같음)

## 현행

(별표 1) 직원의 직종 등 구분과 직급 및 직위

직군	직렬	직급 직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임 원		임 원	월장								
		기획실장	기획실장								
		부 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간호부장								
의 료	의무	의 사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치 과 의	전문의, 일반의								
		한 의 사	전문의, 일반의								
	약무	약 사	약제과장, 약사								
		한 약 사	한약사(또는 한약조제약사)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	[4급 내지 6급] 진단검사팀장, 영상의학팀장								
		방 사 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4급 내지 9급]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포함),								
		영 양 사	영양사, 산업위생기사								
간호		간 호 사	[4급 내지 6급] 간호팀장, 수간호사 [4급 내지 9급] 일반간호사								
		간호조무사	[6급 내지 9급]간호조무사								
일 반	관리	행 경									
		전 기 기 사									
		열 관 리 사	[4급 내지 6급] 부서 각 팀장								
		환 경 기 사									
		건 축 기 사	[4급 내지 9급] 행정직 직원								
		산업안전기사	열관리사, 전기기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의공기사								
		의 공 기 사	산업안전기사, 소방기사								
기능		운 전 사									
		조 리 사									
		사 무 원	[6급 내지 9급] 운전사, 조리사, 사무원,								
		장례지도사									
		기 계 원									

1. 각 부장의 직종, 직위, 직급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다.

2. 건강검진팀장, 공공의료팀장은 의료, 일반 직군 중 4급 내지 6급 직원 중에 보한다.

## 개정

(별표 1) 직원의 직종 등 구분과 직급 및 직위

직군	직렬	직급 직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임 원		임 원	월장								
		기획실장	기획실장								
		부 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간호부장								
의 료	의무	의 사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치 과 의	전문의, 일반의								
		한 의 사	전문의, 일반의								
	약무	약 사	약제과장, 약사								
		한 약 사	한약사(또는 한약조제약사)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	[4급 내지 6급] 진단검사팀장, 영상의학팀장								
		방 사 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4급 내지 9급]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포함),								
		영 양 사	영양사, 산업위생기사								
간호		간 호 사	[4급 내지 6급] 간호팀장, 수간호사 [4급 내지 9급] 일반간호사								
		간호조무사	[6급 내지 9급]간호조무사								
일 반	관리	행 경									
		전 기 기 사									
		열 관 리 사	[4급 내지 6급] 부서 각 팀장								
		환 경 기 사									
		건 축 기 사	[4급 내지 9급] 행정직 직원								
		산업안전기사	열관리사, 전기기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의공기사								
		의 공 기 사	산업안전기사, 소방기사								
기능		운 전 사									
		조 리 사									
		사 무 원	[6급 내지 9급] 운전사, 조리사, 사무원,								
		장례지도사									
		기 계 원									

1. 각 부장의 직종, 직위, 직급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다.

2. 건강검진팀장, 공공의료복지팀장은 의료, 일반 직군 중 4급 내지 6급 직원 중에 보한다.

□ 공고 제2018-92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9. 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강령 제446호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휴가기간은 제24조 및”을 “휴가기간, 인사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으로 한다.

제30조 7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25조 (연차 휴가) ①~③ (생략)  <u>④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u></p> <p>제26조 (연차휴가의 이용 및 보상) ① (생략)      ②직원이 제27조 제2항의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제28조에 의한 산전산후의 휴가기간은 <u>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u></p> <p>③~④ (생략)</p> <p>제30조(특별휴가) (생략)      1.~6. (생략)  <u>7. &lt;신설&gt;</u></p>	<p>제25조 (연차 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  <u>④&lt;삭제&gt;</u></p> <p>제26조 (연차휴가의 이용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휴가기간, 인사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0조(특별휴가)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u>7.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u></p>

□ 공고 제2018-93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을 이에 공  
포한다.

2018. 9. 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47호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임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아목 중 “의료법 제23조의 2”를 “의료법 제23조의 3”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로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에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 · 기부 · 후원 ·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 · 경매 · 연구개발 · 시험 ·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료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의 2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 2 조(정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직원”이라 함은 <u>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u> 나목의 규정에 의한 원장 및 그 임직원을 말 한다.</li> <li>2.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생략)</li> <li>아. 의료법 <u>제23조의 2</u>,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 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li> </ol> </li> </ol>	<p>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u> -----.</li> <li>2.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 (현행과 같음)</li> <li>아. ---<u>제23조의 3</u>, -----.</li> </ol> </li> </ol>

현 행	개 정(안)
<p><b>제6조(알선 · 청탁 등 금지)</b></p> <p>① (생략)</p> <p>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u>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신설)</p>	<p><b>제6조(알선 · 청탁 등 금지)</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u></p> <p>③ <u>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에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 · 기부 · 후원 ·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li> <li>2.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li> <li>3. 입찰 · 경매 · 연구개발 · 시험 ·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li> <li>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li> <li>5.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 ·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li> <li>6.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li> <li>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li> <li>8.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가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li> <li>9. 그 밖에 의료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li> </ul>
<p><b>제8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b> 직원은 임직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b>제8조의 2 (삭제)</b></p>

□ 공고 제2018-94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9. 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48호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율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각 율에”로 하고, 같은 항 1호~4호를 삭제한다.

제220조제2항제1호 중 “1배이내. 다만, 추정가격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원장이 정한다”를 “3분의 1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p>제186조 (지체상금)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 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써 계약금액에 대하여 <u>다음 각 호의 율에</u> 의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도록 정하여야 한다.</p> <p><u>1. 공사 : 1000분의 1</u></p> <p><u>2. 물품의 제조 · 구매(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개정 2011, 3, 14)</u></p> <p><u>3. 물품의 수리 · 가공 · 대여, 용역(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및 기타 : 100분의 2.5 (개정 2011, 3, 14)</u></p> <p><u>4. 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개정 2011, 3, 14)</u></p> <p>②~④ (생략)</p>	<p>제186조 (지체상금) ①----- ----- ----- <b>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각 율에 -----.</b></p> <p><u>1.~4. &lt;삭제&gt;</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2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가. 공사 ·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u>1배이내. 다만, 추정가격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이내에서 원장이 정한다.</u></p> <p>나. (생략)</p> <p>2. (생략)</p> <p>③~⑤ (생략)</p>	<p>제22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 <b>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b></p>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 공고 제2018-95호

이사회의 심의 · 의결과 충청북도 승인을 얻은 충청북  
도청주의료원 중환자실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 9. 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규정 제449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중환자실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중환자실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의는”을 “정기회의는 반기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생략)	제6조 (회의) ① ----- 정기회의는 반기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 ② (현행과 같음)